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687호 2020. 9. 10.(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49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1
- 사천시 규칙 제750호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0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
- 사천시 고시 제30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127호 서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 18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115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 687호

사천시 규칙 제74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2020년 9월 10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 급 이상 직원
 -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 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
 -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제 687호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천 시 공 보

제 687호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급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시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시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적절성 (10점)	□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고충처리계획, 급식제공 및 관리계획이 적정 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적 시설운영 가능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서류 확인)	4점
(· · · <u>—</u> /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마련 여부	3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 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 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적절성 (10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시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시설안전	지자체별 심사 기준	
계획 및 지역사회	□ 시설안전계획(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트 등)이 적정 수립 및 CCTV설치여부	5점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	 어야 함

제687호

2.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 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함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 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지공 능력 (10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적절성 (10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10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 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 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이 것 적절성 (10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시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5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5점
능력 (10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ماما خا

제687호

3. 복지용구제공시설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50점
장기요양기 관의 운영계획	심시자료: 운영규정, 시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 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15점
(30점)	□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5점
_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10점, 해당하는 경우: 0점)	10점
능력 (20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10점
	합 계	100점
※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이	<u> </u>

제 687호

사천시 규칙 제75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 육 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0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천 시 공 보

제 687호

〈현 행〉

[별 표] <개정 11.6.1, 2019.3.11.>

<u>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9조제2항관련)</u>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8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9명 이상 15명까지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6명 이상 30명까지 또는 매출액 8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경영안전자금	100백만원	150백만원	225백만원	3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제 687호

〈개정안〉

[별 표]

<u>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9조제2항관련)</u>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8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9명 이상 15명까지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6명이상 30명까지 또는 매출액 8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경영안전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제 687호

사천시 고시 제2020-30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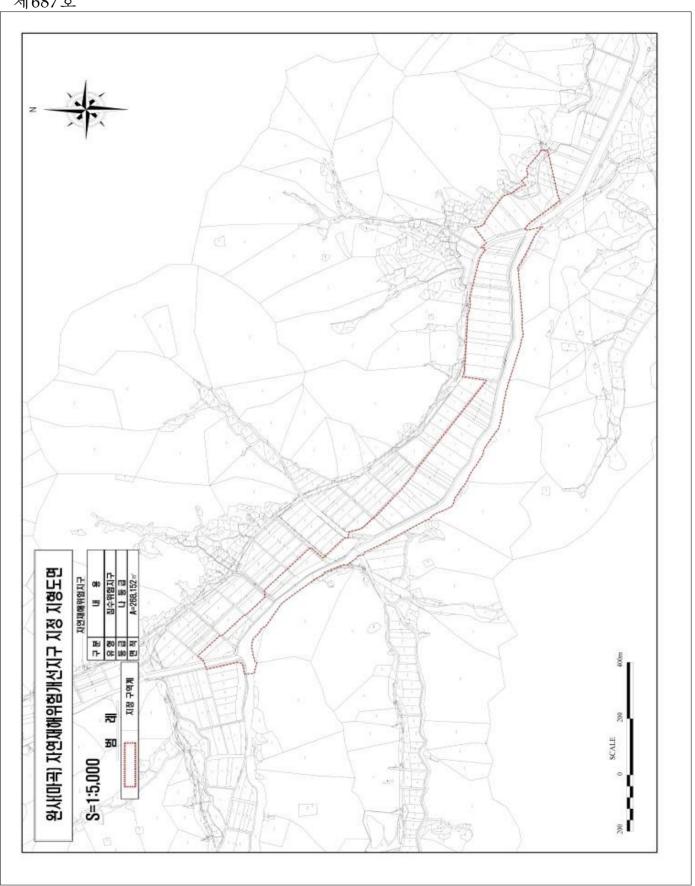
사 천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	<u>Q</u> 0	지정사유	비고
시구당	귀 시	유형	등급	면적(m²)	시청시fm	비끄
완사 (마곡) 지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마곡리 일원	침수 위험	나	268,152	집중호우 발생 시 제방 월류 및 저지대침수	신규

-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 3. 이해관계인은 사천시 재난안전과(055)831-331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1부. 끝.



제 687호

사천시 고시 제2020-30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칭)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m²)	용도지역	비고
(가칭)사천항공산업 단지 조성사업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가산리 일원	1,035,410	계획・생산・보전 관리, 농림지역	

2. 제한사유

O『(가칭)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연장 사유

-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함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4.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 O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O 토지의 분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
- 5. 제한기간 연장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간 만료일(2020.10.25.)로부터 2년간 연장하며, 제한 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로 함
- 6.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7. 기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에 비치 열람함

제 687호

사천시 공고 제2020-1127호

서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정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서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서정1지구 : 22필, 6,355.4㎡

4. 지적확정조서 :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공람장소 :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1~2843,2978)

제687호

서정1지구 지적확정조서

호되다호	至지소재지		중전토지		일관한다		확정토지		Kio.	RP.	本部本	华	디H
100	2015 State Co.	지번	지목	면적(m)		지번	지목	면적(m)	(m)	(m)	The state of		
0	곤망면 서정리	1-9£1	h	494	1	136-1	ь	646.1	152.1		문•자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성정마물길 132-1*	
	곤망면 서정의	136-2	ь	7			점			0.7	조•리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서정리 23*	
100	곤양면 서정리	136-3	B	409	2	136-3	Æ)	370.8		38.2	今・ゆ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48-29, 2동 *호(학장동,1차삼성아파트)	
-	곤양면 서정리	136-4	to	614	м	136-4	K)	595.4			71-8 01-00	TAND THE TOTAL STREET	
1		8 0			*	136-5	5	35.0	10.4		다. 6 보 2년	68.88 보 수입스 다양일 8.85.4mm le .	
1	곤양면 서정리	191	割	76			쇖			76.0	문*자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물길 132-1*	
	곤양면 서정리	162	Æ)	182			잠			182.0	4	경상남도 전추시 신명공원길79번길 11(신안동)	
1	곤양면 서정리	211-9	ы	478	2	211-9	ы	428.0		20.0	국(송림축산식품부)		
	곤양면 서정리	228	KI	383	9	228	到	330.7		-	F.	THE PARTY PROPERTY OF THE PARTY	
				0	7	228-1	E)	92.7	40.0		H	성상리는 사건스 다양한 6.69년째 10.	
1	곤양면 서정리	229	K)	314	80	523	Į,	344.9	30.9		が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을길 15*	
-	곤망면 서정의	230-1	ь	425	Ø1	230-1	5	427.8	2.8	S. (7	사.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물길 16*	
17717	곤양면 서정의	230-2	ь	247	01	230-2	b	338.6	91.6		本本	경상남도 사전시 근양면 상정마물길 15*	
	곤양면 서정리	230-3	ь	760	11	230-3	1	9'209		152.4	감~석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을길 14*	
-	곤망면 서정리	230-4	ь	207	12	230-4	ь	235.8	28.8		72.40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55, 401동 *호(초전동, 초전 해모로 루비채 4단지)	
	곤양면 서정리	230-5	Ы	382	13	230-5	ь	362.2		19.8	젊-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18, 108동 *호(민락동,센템비치푸르지오)	
1700	곤양면 서정리	230-6	ы	286	14	230-6	ь	379.8	93.8		88+라	*-ZVL 문용교육 상정마용 및 142-*	
	곤양면 서정리	230-7	ы	183	5	230-7	п	239.4	56.4		⊕-₩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물길 142~*	
	곤양면 서정리	230-8	ы	310	16	230-8	ь	413.8	103.8	i= (i=	조수요용		
11797	곤양면 서정리	230-9	Ы	76	11	230-9	ь	45.3		30.7	李章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상정마물길 15*	
	곤양면 서정리	231-2	ы	46	18	231-2	ь	54.6	9.6	5	사전시		0
OF THE LOCK	곤양면 서정의	1181-8	t	232	16	1181-8	t	253.3	1340	Š	SCHOOL STANSON		S-
					20	1181-9	÷	103.6	5.4.3		(+arara)r		
750	곤양면 서정리	1209-3	ы	17	21	1209-3	ы	21.4	000	0	i an		
					22	1209-7	3	28.6			(+0=+-)-		
2000	곤양면 서정리	산3-9	8	65			말소	333		65.0	- 49	경상남도 잔주시 신평공원길79번길 1~(신만동)	
110011	곤양면 서정리	산3-10	B	161			말소			0.191	か・程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79번길 1·(신만동)	
-		23番灯		6,354		22署지		6,355.4	783.5	-782.1			

제 687호

사천시 공고 제2020-1115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기준 확대(안 제10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05일까지

제 687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055-831-3881, 팩스: 055-831-605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Q** 주 소:
 - O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 68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로, "설치·운영에 관한"을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본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관리요원을 둘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농기계 임대 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를 "트랙트,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로,

제 687호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를 "제1항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를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복구 등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	제1조(목적)
법」제3조 및 <mark>「지방자치법」제136조의</mark>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u>규정과 관련하여</u> 농업기계화를 촉진하	<u> 따라</u>
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u>설치·운영에</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3조(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2
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	- <u>이 조례에 따라</u>
기계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제6조(관리요원) ①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u>관리요원을 담당</u>	<u>관리요원을 둘 수</u>
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u>있다.</u>
<u>〈신 설〉</u>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u>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u>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u>신청서</u>	<u>농기계</u>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받은 후 별	<u>임대 신청서</u>
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생 략)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현행 과 같음)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의 0.2퍼센트 금액을 1일 사용료로 납부하되, 천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단, 단일기종의 임대료가 일천원 미만일 경우 일천원으로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40kg)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 ② 교육 훈련용 대체농기계(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의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①
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사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u>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u>
 ④ <u>제10조 규정</u>에 해당하는 자가 <u>목적외</u>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④ <u>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목적 외 <u>따른</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 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 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현 행	개 정 안
2. <u>재해 복구 등 시장</u> 이 공익상 필요하다	2. <u>시장</u>
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1. ~ 2. (생 략)	② <u>따른</u>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u>납부된 사용료는</u>	제11조(사용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u>
<u>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u>	<u>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	<u>반환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